

문서번호	공사감독1처-3203
보존기간	영구
결재일자	2017.05.24.
공개여부	공개

대리	팀장	공사감독1처장	시설안전본부장	
협 조	공사감독2처장			
	공사감독3처장			

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후심사결과 조치계획 보고

2017. 5.

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후심사결과 조치계획 보고

공사감독처 “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(KOSHA 18001)” 사후심사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조치계획 보고임 ※ 전략데스크 회의시 이사장 서면보고 (2017.5.2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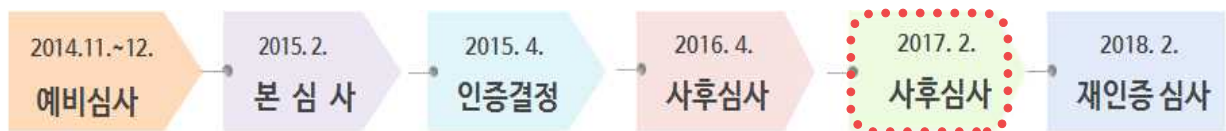
I 현황

심사개요 ※ 심사기간 : '17. 2. 22 ~ 4. 17 (기간 중 6일)

구 분	일자	심사대상	심사자(안전보건공단)
본사심사	2. 22	공사감독1,2,3처 팀장 및 공사감독	반상구 기술위원 등 3명
현장심사	2. 23	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	반상구 기술위원 등 2명
	3. 21	이태원로 191-134 하수관로 개량공사	반상구 기술위원
	3. 28	방배로 하수암거 신설공사	반상구 기술위원
	3. 30	고산자교 주변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	반상구 기술위원
경영자 면담	4. 17	시설안전본부장, 공사감독1처장 등	이영덕 기술위원 실장 등 2명

〈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절차〉

◆ **인증심사** : 본심사(최초 인증시), 사후심사(1년 단위), 재인증심사(3년 단위)



◆ **심사내용** : 본사심사 + 현장심사 + 경영자 면담

- 본사심사 : 안전보건경영매뉴얼 등 관련문서 심사 및 관계자 면담
- 현장심사 : 임의 현장선정, 현장점검, 서류검토, 관계자 면담
- 경영자 면담 : 안전보건경영체계 심사결과 및 경영자 의지 확인

심사결과 : 총 7건 개선요구 및 권고 (개선요구 3건, 권고 4건)

◆ **개선요구사항(3건)**

-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해수준 향상 및 매뉴얼 숙지를 위한 대책 필요
- 내부심사 활동 강화 필요
- 현장 안전보건목표 구체적 작성 필요

◆ **권고사항(4건)**

- 공사현장 업무분장 역할과 책임 명확화, 건설업체 안전보건활동 동기부여 등

II 지적사항 조치계획(안)

1)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해수준 향상 및 매뉴얼 숙지 대책 필요 개선

《 심사의견 》

본사 및 현장 공사감독 및 시공사관계자 면담결과 일부 구성원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수준, 매뉴얼에 대한 숙지정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 됨.

현황 및 문제점

- 규모가 영세하고 공사기간이 짧은 도심지공사 특성상 건설기술자의 이동이 많고 매년 신규업체 비율 높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교육을 받지 못한 다수의 시공사 지속적 발생으로 시스템 이해 및 매뉴얼 숙지정도가 다소 낮은 실정임

조치방안

- 건설공사관계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교육 이력관리 및 내실화를 통한 역량 강화

시공사와 함께하는
안전관리 특별교육

+

찾아가는 현장
순회교육

+

내부전문가 양성을 위한
감독대상 외부위탁 교육

- 건설현장관계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특별교육 실시 : 연 2회(5월, 9월)
 - 참석대상 : 공사감독 및 시공사관계자(교육 미실시자 의무참석)
 - ※ '17. 4. 19 외부전문가 초빙 특별교육 기시행(공사감독 및 현장대리인 90명)
- 찾아가는 현장 순회교육 실시
 - 시행방식 : 안전성 등급 2, 3단계 현장에 대해 공사감독지원팀 방문교육
- 감독대상 외부위탁교육(안전보건공단) 지속시행 : '17년 교육인원 8명
 - 교육과정 : 위험성평가 및 심사원 과정 * '16년 : 5명 교육이수
- 성과측정 빈도 및 현장관계자 인터뷰 강화를 통한 상시 긴장감 유지
 - 성과측정(모니터링) 강화 : 반기 → 수시측정, 측정대상 40 → 80개 현장
 - 성과측정 체크리스트 현장관계자 인터뷰 항목 배점 상향 조정

현 행

위험성평가(60점) + 안전서류(20점)
+ 인터뷰(20점)



변 경

위험성평가(50점) + 안전서류(20점)
+ 인터뷰(30점)

2) 내부심사 활동 강화 필요 개선

《 심사의견 》

내부심사는 내부직원이 수행하여 당사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을 통한 수준향상에 목적이 있으므로, 안전보건활동 추진 계획의 실행여부 성과측정과 명확한 구분 실시 필요

현황 및 문제점

- '15년 인증 후 현재까지 내부심사원 부재에 따른 내부전문가 양성시까지 안전보건공단 사후심사로 대체토록 운영하였으나, 그간 안전전문관제 도입 및 외부 위탁교육 등을 통한 내부직원의 역량강화로 별도의 내부심사 가능

조치방안

- 내부심사자(전문가) POOL 구성 및 내부심사 활동 강화
 - 심사반 구성 : 총 7명(공사지원팀장, 안전전문관, 관련교육이수자 등)
 - ※ 필요시 외부심사원(안전보건공단 심사원 자격취득자) 포함
 - 내부심사 강화 : 매년 1회(10~11월)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적합성 및 효과성 평가

현	행	변	경
사후심사(안전보건공단)+성과측정(내부)		사후심사(안전보건공단)+성과측정(내부) + 내부심사(내부전문가, 필요시 외부전문가 포함)	

3) 현장 안전보건목표 구체적 작성 필요 개선

《 심사의견 》

현장별 안전보건 목표는 있으나 일부 현장의 목표는 구체성이 부족하므로 현장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되도록 관리 필요

현황 및 문제점

- '15년 인증 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해 “위험성평가 100% 실시”의 공단목표와 현장목표를 동일하게 운영하여 현장특성 반영 다소 부족

조치방안

- 안전보건목표 심사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실효성 강화

사전심사를 통한 목표 수립 지도 + 성과측정을 통한 목표 달성 상시 모니터링

- 안전관리대책 사전심사시 안전보건목표 현장특성 반영 및 구체성 여부 심사·지도
- 성과측정 심사항목 반영을 통한 목표달성여부 심사 및 모니터링

4) 기타사항 권고

- ① 현장 업무분장시 시공, 안전, 비상시업무 등을 한곳에 기재(게시)하여 현장 구성원이 업무분장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, 확인(서명)을 받도록 관리 필요
 - 현장업무분장 작성시 모든 구성원에 대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문서화 하여 서명후 현장에 게시토록 지도관리 철저
- ② 현장감독의 안전보건 역할수행에 대한 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, 개인평가 반영 등 현장감독의 안전보건 역할 강화 필요
 -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행담보방안으로 공사감독일지에 위험성평가서 등 안전보건활동사항을 첨부하고 미이행시 개인평가시 참고자료 활용(권고)
- ③ 안전보건매뉴얼 개정시 최근 인증업무 처리규칙과 항목 및 순서 일치 필요
 - 안전보건경영매뉴얼 개정시 의견 반영('18. 2월)
- ④ 건설업체 자율적인 안전보건 수준향상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평가결에 따른 우수업체와 불량업체에 대한 상벌 등 차등관리 필요
 - 안전보건경영매뉴얼상 공사감독에 대한 상벌을 건설업체로 확대 시행
 - 성과측정 우수업체 : 연말 안전관리우수현장 3개이상 선정 포상
 - 성과측정 불량업체 : 성과측정 C등급이하 평가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현장 특별점검(주1회) 등 중점관리 실시, 경고 공문 발송
 - ※ C등급 : 성과측정 70점이하, 중대재해 1건이상, 2개월이상 치료 2건이상 등

Ⅲ 향후 추진계획

- '18년 2월 재인증심사 대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실시
-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경영 우수기관 벤치마킹 추진
 - 18년도 별도예산 반영조치 : 관외여비
- 내부심사 활동에 따른 마일리지 및 전문서적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. 끝.